



전기공사업법 의원입법 개정추진과 관련하여..

문의 | 제도연구실(02-2182-0710~3)

■ 발단배경

- 지난해 7월 13일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이전 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기획, 설계, 감리, 시공, 사후관리 등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발주자로부터 수탁받아 건설업자 책임하에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공사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전기, 소방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지라도 향후 전기, 소방, 정보통신업계에도 시공책임형 CM제도가 도입될 것을 예상하여 우리협회를 포함한 정보통신, 건설감리협회 등과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 동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전기, 소방, 정보통신업계의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시공책임형 CM제도를 도입할 경우 종합건설업자가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의 설계, 감리, 시공 등의 용역을 일괄하여 수주하는 것을 막도록 건설공사(전기공사 제외)에만 한정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발주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서 좀더 명문화한 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난 7월 6일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중이다.
- 이와 관련, 전기, 소방, 정보통신업계에서도 전기공사업법 등 각각 개별법에서 시공책임형 CM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각 해당부처와 관련단체에서는 이를 준비하고 있으며, 금번 전기업계에서 먼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ECM)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자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상태다.

■ 대응경과

- 우리협회는 금번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중에서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ECM)제도가 전기설계 · 감리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설계 · 감리업자를 하도급자로 전락시키는 것을 우려하여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전기설계, 감리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국회, 지경부 등과 협의 중에 있다.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중 시공책임형 CM제도가 원안되로 통과될 경우 향후 전기분야에서도 설계 · 감리 업계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동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현행과 같음)

10.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 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업자가 발주자와 계약을 통하여 전기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정해진 공사금액 내에서 공기 및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전기공사,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추진 경과

- 09. 5. 21 : 건설산업기본법 입법예고(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미포함)
- 09. 7. 13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제 입법예고

▣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제4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과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정해진 공사 금액 내에서 공기(工期) 및 재정적 책임을 지고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⑧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는 시공단계에서 발주자와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09. 07. 15 : 전기공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함께 국토부 방문
- '09. 12. 23 : 협회에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제도 삭제요청 공문발송(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에 제출)
- '10. 01. 05 : 법률 개정(안) 조정 후 관계부처협의안 확정
- '10. 04. 02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류중
- '10. 06. 15 :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권성동의원 외 공동발의